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5호, 2021.12.28. 공포)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 소방시설 실태조사, 학교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수행, 심리치료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안 제12조)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에 관한사항 규정 추가

나.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안 제12조의2)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대상 교육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자동차 진입로 범위 등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3)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방법, 조치계획서, 조치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조치결과 보고 및 이의신청(안 제12조의4)

조치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조치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치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안 제23조의2)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지원 범위와 대상 규정

바. 사전기획의 대상 등(안 제24조의2)

사전기획의 대상 및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규정함

사.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안 제24조의3)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절차,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함

아.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25조)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환경 및”을 “감염예방, 환경 및”으로, “쾌적한”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쾌적한”으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23조의2,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재난 · 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육시설의 경우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 및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 시작일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즉시 결과보고가 어려운 경우
2. 조치사항이 간결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당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조치결과 보고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조치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조치가 완료된 즉시 조치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및 시정명령의 사유, 내용 및

이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조치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의 물적 피해
2. 교육시설이용자의 인적 피해
3. 교육시설이용자의 물적 피해
4.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교육시설의 장의 손해배상책임

제24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이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교

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24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①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의3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이하 “적정성 검토”라 한다)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보고서를 법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적정성 검토기관”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보고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전기획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적정성 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

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정성 검토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 검토의 내용 및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해당 교육시설 사업의 착공 전에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적정성 검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사전기획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에 관한 적용례) 사립학교의 교육시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법 제2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지정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전기획 의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시설의 <u>환경</u>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u>쾌적한</u> 실내 환경 유지 및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 <u>감염예방, 환경</u> 및 -----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쾌적한</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2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재난·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육시설의 경우 긴급 실태</u>

<신 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
여야 할 사항 및 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방
청장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
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
사 시작일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
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
설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지
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통
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교육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신 설>

하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즉시 결과보고가 어려운 경우

2. 조치사항이 간결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당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조치결과 보고 및 이의 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조치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조치가 완료된 즉시 조치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및 시정명령의 사

<신 설>

유, 내용 및 이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조치통보에 대하여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의 물적 피해
2. 교육시설이용자의 인적 피해
3. 교육시설이용자의 물적 피해
4.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교육시설의 장의 손해배상책

<신 설>

<신 설>

임

제24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이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24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

섬 검토 절차 등) ① 초·중·

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의3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이하 “적정성 검토”라 한다)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보고서를 법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적정성 검토기관”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보고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전기획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적정성 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정성 검토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 검토의 내용 및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해당 교육시설 사업의 착공 전에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적정성 검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 ⑦ (생략) <u><신설></u>	<u>공받은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⑧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u> <u>1. 법 제2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사전기획에 관한 업무</u> <u>2.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시설과	
연 락 처	(044) 203 - 6301